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191096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9.10.29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09.12

반반택시

정보공개서

(주)코나투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49 조의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7 조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 코나투스

<주의 사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 필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 번길 12, 5 층(삼평동, 경기도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번호: Tel : 1566-1259

가맹사업부번호: 1566-1259

홈페이지: banbantaxi.com

대표이메일: contact@kornatus.com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별첨서류]

1. 가맹본부 재무자료(2019~2021)
2. 가맹금 예치 신청서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코나투스	2018.06.15	2018.06.22	사업자등록번호 486-87-01131 법인등록번호 110111-6781713
	영업표지	주 소	
	반반택시 외 1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5층 (삼평동, 경기도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김기동	1566-1259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사용인 (임원)	김기동	반반택시 외 1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5층 (삼평동, 경기도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기동	1566-1259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사용인 (임원)	문나윤	반반택시 외 1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5층 (삼평동, 경기도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기동	1566-1259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사용인 (임원)	이득원	반반택시 외 1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5층 (삼평동, 경기도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기동	1566-1259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 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가맹사업 관련 사업 양도·양수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반반택시	-
상 호	반반택시 OO 점	-
상 표		상표 등록번호: 4015929300000 자세한 내용은 I-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반택시	상표 등록번호: 4017217540000 자세한 내용은 I-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 고	-	-
그 밖의 영업표지	-	-

5.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

1) 연도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당사의 최근 3 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4,307,454	1,056,666	3,250,788	364,463	-2,158,210	-1,789,212
2022년	15,126,920	1,836,122	13,290,797	402,369	-2,854,224	-2,563,873
2023년	14,894,135	3,835,364	11,058,771	506,872	-2,166,607	-2,232,026

그 근거자료는 별첨 1 과 같습니다.

2) 연도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최근 3 년 동안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기동	2018.06~현재	(주)코나투스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문나윤	2018.06~현재	(주)코나투스 사내이사	관리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이득원	2024.04~현재	(주)코나투스 기타비상무이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1	1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코나투스	가맹사업 경영	2020.09~현재	반반택시(등록번호: 20191096)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코나투스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시작 예정	투루택시(등록번호: 20211269)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 등록일	출원번호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	------	------------	--------------	----------------	-------------

반반 택시 (상표권)	운송업 보관업	등록일 2020.04.03	등록번호 4015929300000	(주)코나투스	2030.04.03
반반택시 (상표권)	운송업 보관업	등록일 2021.05.06	등록번호 4017217540000	(주)코나투스	2031.05.06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 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Ⅱ. 가맹본부의 [반반택시] 가맹사업 현황

1. [반반택시]를 시작한 날(가맹점 오픈일): 2020 년 09 월 28 일

2. [반반택시]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코나투스	반반택시	김기동	2020.09~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 번길 12, 5 층 (삼평동, 경기도창조경제혁신센터)

3. [반반택시]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반반택시	운송	택시

4.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말 [반반택시]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의 최근 3 년간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386	386	-	230	230	-	209	209	-
서울	193	193	-	90	90	-	96	96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20	20	-	14	14	-	9	9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73	173	-	123	123	-	101	101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3	3	-	3	3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 년간 [반반택시] 가맹점 수

당사의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년	545	-	-	159	-	386
2022년	386	3	-	159	-	230
2023년	263	-	-	54	-	209

6. [반반택시]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코나투스	반반택시	20191096	운송	368/-	214/-	209/-
가맹본부	(주)코나투스	투루택시	20211269	운송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가 직전년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평균 매출액						비고
		매출액	면적 3.3 m²당	상한	면적 3.3 m²당	하한	면적 3.3 m²당	
전체	209	352	무점포	14,693	무점포	6	무점포	114곳 산정
서울	96	126	무점포	350	무점포	9	무점포	41곳 산정
부산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대구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인천	9	226	무점포	510	무점포	66	무점포	6곳 산정
광주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대전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울산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세종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경기	101	149	무점포	623	무점포	6	무점포	64 곳 산정
강원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충북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충남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전북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전남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경북	3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경남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제주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카드결제액에 따른 매출액 입니다.]

[매출액 파악이 안된 가맹점의 데이터는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209 개가 아닌 실제 114 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9 조제 3 항·제 4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반반택시]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반반택시]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09	1,187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가맹지역본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바로 전 사업연도의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단위: 천원, VAT 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광고비		(비공개)	91,156	-
판촉비	-	(비공개)	-	-

*본 정보공개서 영업표지 및 당사가 사용한 금액은 상기 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가맹본부가 회계상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발생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금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부서	주소	전화번호
	기업고객부	서울 중구 을지로 2 가 50	02-729-6764

※자세한 예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기업은행 계좌가 있는 사업자	직접 방문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지점)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 받아 보관
	인터넷 뱅킹 이용시	① 인터넷뱅킹(www.ibk.co.kr) 접속 → ② 뱅킹 로그인 → ④ 부가서비스/가맹금인터넷예치서비스/가맹점사업자 클릭 ⑤ 가맹본사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 ⑥ 가맹본부 확인 → ⑦ 가맹점사업자 정보 입력 및 예치금액 입력 → ⑧ 가맹금예치 완료
기업은행 계좌가 없는 사업자		기업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실행

계좌 개설시 필요서류	본인이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대리인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기업은행과 가맹금예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반반택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택시의 운영비, 관리비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해야 할 부담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예치여부	비고
가맹금	-	예치	-
보증금	-	예치	-
설비, 기기, 비품 등 기타비용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예상 추정 금액

1) 최초가맹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금액(VAT 포함)	지급 기한	비고
가맹비	없음	-	-
교육비	법인사업자일 경우: 없음	-	-
	개인사업자일 경우: 264	영업개시 전	서비스 입문 교육 드라이버 1 명에 대한 금액

※ 가맹점사업자가 법인사업자일 경우 영업개시 이전에 당사에 지급해야 할 교육비는 없습니다. 다만, 영업개시 이후 가맹점사업자(법인) 소속 드라이버가 "반반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입문교육을 이수 받아야 하며, 해당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IV-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금은 계약체결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아래 ③의 경우 당사의 영업종단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해지 시에 귀하는 당사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반환될 수 있습니다.

① 당사가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 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수령(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당사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2) 보증금액

당사는 귀하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귀하가 예치하여야 할 예치가맹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VAT포함)	비고
교육비	264	가맹점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일 경우

*가맹점 개점 이후 발생하는 교육비는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당사에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	385	-	-	-

초기 패키지	가맹본부	220	영업시작 전	미설치 시	데칼/갓등/외부스티커 등
전용단말기	가맹본부	165	영업시작 전	미설치 시	-

④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상기 지급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여객운송가맹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매너 교육, 안전운전 교육, 서비스 입문 교육, 고객 클레임 교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자
종업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
랍니다. -경기도-**

2. 영업 중의 부담

1) 계속가맹금 등의 비용부담

귀하는 가맹사업을 개시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및 방법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부담금 없음	-	-	브랜드광고 상품광고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부담금 없음	-	-	가맹점모집광고 상품광고
	-	100%	-	-	가맹점 개별 광고 및 판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별첨1_1. 거래상대방 참고	협의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서비스 입문교육	가맹본부 및 협력업체 (미지정)	264,000	교육실시 전	실시 후	드라이버 1인당 금액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	가맹본부 및 협력업체 (미지정)	실비	교육실시 전	실시 후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 드라이버 1인당
로열티	가맹본부	20,000	매월 10일	-	후불
홍보/마케팅/포인트지급/적립					
호출 플랫폼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가맹본부	실비	매월 10일	-	후불
전용단말기 통신비	가맹본부 및 협력업체 (미지정)	5,000	매월 10일	데이터통신 사용료로 반환되지 않음	후불

외부설비 유지보수	협력업체 (미지정)	실비	-	실시 후	교체 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협의하여 결정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변경 비용	협력업체 (미지정)	협의	실시 전	실시 후	교체 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협의하여 결정
영업장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위 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실 지불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2023년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 미포함)

구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0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00%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는 당사가 직접 수취하는 품목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부동산 임차료를 지급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직전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 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로열티, 광고비,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품목을 제외하고 가맹점 운영 중에 공급되는 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2023 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차액가맹금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영업장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부내역		시기	비고
설비 점검 전용단말기	외부설비	데칼, 갯등, 외부스티커 운영상태	부정기	-
	내부설비	충전기 운영상태	부정기	-
	전용단말기	차량단말기 운영상태	부정기	-
회계처리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정산 데이터 불일치 시 이를 확인하기 위한 회계 조사 실시		발생 시	-

※ 점검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영업장을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영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자료요청은 서면, 이메일, FAX, POS, 발주 프로그램,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 10 년이 지나면 당사는 귀하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재가맹비(10 년 후 신규 가맹계약서상 가맹비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는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본 정보공개서 [I-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따라 귀하에게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당사는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소유권(사용권)변경, 효력상실 등으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귀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귀하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유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귀하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가맹금의 일부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비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은 당사에 교육비를 납입하고, 당사가 실시하는 서비스 입문 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아야 합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①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귀하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귀하는 “반반택시”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귀하의 비용으로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등록(114 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온/오프라인에서 “구)반반택시” 또는 “전)반반택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당사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당사가 철거 및 삭제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② 귀하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매뉴얼 등 모든 관계서류의 원본 및 복제본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당사에 대하여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는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한 이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차액가맹금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사의 [반반택시]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본 정보공개서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2)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본 정보공개서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3. 서비스,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서비스의 판매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브랜드 충성도 및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서비스를 구성/판매해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서비스	가맹서비스의 내용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반반택시 전용택시	별도 관리된 차량과 별도 교육받은 기사가 제공하는 반반택시 플랫폼 기반의 브랜드 택시 서비스	좌측에 기재된 서비스 및 상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해야 함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반택시 예약/대절 택시	출/퇴근, 기타 목적의 예약/대절 전용 택시 서비스		
반반택시 업무택시	기업/관공서 등의 업무용 택시 서비스		
기타 택시	여성전용 택시 노인전용 택시 동승 전용 택시 고급 택시 복지 택시 수요응답형 택시 외국인 관광택시 외국인 의료관광 택시		

① 귀하가 지정된 서비스를 판매/구성하지 않거나, 지정된 서비스 외 다른 서비스를

판매/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당사는 계약기간 중 경영환경의 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V-3-1)의 표에 기재된 가맹서비스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취급하는 서비스의 제한	위반 시 책임
V-3-1)의 서비스명 외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맹서비스의 판매 제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서비스명 및 이에 대한 가격은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경영환경의 변화 등 필요 시 변경·추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당사의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관할관청이 정하는 택시운임 기준에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권장가격(단위: 천원)	가격 통보 방식	비고
V-3-1)의 표에 기재된 서비스	가맹본부에 의해 제시된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별도 통보	홈페이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유선, 이메일, 팩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할 지자체 협의에 의해 요금 및 호출료는 변동될 수 있음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9 조의 17 에 의하면 가맹사업법 제 12 조의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9 조의 17 에 의하면 가맹사업법 제 12 조의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9 조의 17 에 의하면 가맹사업법 제 12 조의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가맹서비스를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9 조의 17 에 의하면 가맹사업법 제 12 조의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귀하가 취급하는 가맹서비스가 귀하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9 조의 17 에 의하면 가맹사업법 제 12 조의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비가맹 택시사업자를 상대로 귀하에게 제공하고 있는 일반호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반반택시] 가맹점과 구분되는 점
반반택시 앱을 설치한 비가맹 택시사업자	반반택시 앱을 설치한 비가맹 택시사업자	일반호출서비스	단순 호출서비스만 가능

6) 귀하가 취급하는 가맹서비스가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9 조의 17 에 의하면 가맹사업법 제 12 조의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가맹점 총 매출액)	기타 오프라인 (직영점 총 매출액)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0%	0.0%	0.0%	0.0%

2) 바로 전 사업연도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가맹점 전용판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0%	0.0%

6. 계약기간,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① [반반택시]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 년] 입니다.

②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은 [1 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갱신거절(계약 종료) 사유

계약기간 종료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	가맹계약서 관련조문
① 귀하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 28 조 제 1 항 제 1 호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 28 조 제 1 항 제 2 호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법령 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 28 조 제 1 항 제 3 호
④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집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 28 조 제 1 항 제 4 호
⑤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귀하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판매하는 가맹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나.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다. 동종의 타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 수준에서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 28 조 제 1 항 제 5 호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2)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협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일반적인 해지사유

아래 표의 계약 해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5 조에 따라 귀하에게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 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계약 해지 사유	가맹계약서 관련조문
1. 제 6 조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9조 제1항 제1호
2. 제7조 가맹점의 표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29조 제1항 제2호
3. 제 8 조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29조 제1항 제3호
4. 제 9 조 가맹서비스의 판매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29조 제1항 제4호
5. 제 10 조 가맹점사업자의 설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29조 제1항 제5호
6. 제 12 조 최초가맹금, 계속가맹금의 지급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29조 제1항 제6호
7. 제 15 조 인허가의 취득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29조 제1항 제7호
8. 제 16 조 가맹서비스의 표준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29조 제1항 제8호
9. 제 18 조 광고 및 판촉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29조 제1항 제9호
10. 제 20 조 관계법령의 준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29조 제1항 제10호
11. 제 21 조 고객응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29조 제1항 제11호
12. 제 22 조 보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29조 제1항 제12호
13. 제 24 조의 운영매뉴얼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29조 제1항 제13호
14. 제 25 조 감독 및 통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29조 제1항 제14호
15. 제 26 조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29조 제1항 제15호
16. 제 28 조 제 1 항 각호의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제29조 제1항 제16호
17. 제 31 조의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9조 제1항 제17호
18. 제 32 조의 영업비밀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9조 제1항 제18호
19. 귀하 또는 귀하의 종업원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예: 성추행, 폭행, 욕설 등)를 할 경우	제29조 제1항 제19호
20. 귀하가 계약체결일 또는 영업장 이전으로 인한 영업중단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제29조 제1항 제20호
21. 귀하가 가맹계약서 및 관련된 내용(예 : 특약, 별도 약정서, 합의서, 동의서 등 기타 제반 문서)을 위반한 경우	제29조 제1항 제21호

나.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사유

귀하는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경영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당사가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즉시 해지 사유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즉시계약 해지 사유	가맹계약서 관련조문
①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29조 제3항 제1호
②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정지된 경우	제29조 제3항 제2호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9조 제3항 제3호
④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29조 제3항 제4호
⑤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제29조 제3항 제5호
⑥ 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개월 2회의 서면통보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9조 제3항 제6호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⑦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29조 제3항 제7호
⑧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29조 제3항 제8호
⑨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29조 제3항 제9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가맹계약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의 수정사유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가맹계약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가맹계약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의 수정 및 동의 절차

가맹계약의 수정사유 발생 시 당사의 담당자는 수정 가맹계약서(안)을 귀하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계약의 수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귀하는 당사로부터 수정 가맹계약서(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 주일 이내에 수정 가맹계약서(안)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당사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 만일 귀하가 위 기간 내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정 가맹계약서(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1 개월 전) → 당사 담당자 검토(양도인/양수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15 일 가량 소요) → 승인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드라이버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비 지불)→ 양수인 교육→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2)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위탁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V-7-1)의 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상속 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당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상속인, 동업자, 대리인, 위임인은 교육비(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를 당사에 지급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V-6-1) 가맹계약의 기간에 따른 기간 동안 귀하 및 귀하가 제 3 자로 하여금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래와 같이 귀하가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한기간	제한업종	제한지역
V-6-1) 가맹계약의 기간에 따른 기간	플랫폼 택시 서비스	국내 전 지역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반반택시]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제한 없음		귀하가 영업시간을 변경하거나 휴업할 경우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필요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시기
친절/안전	서비스 상태	수시
청결	청결상태 점검	수시
기기설치	기기관리 및 동작여부	수시
택시 외관점검	띠지/스티커 훼손 여부	수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광고의 목적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기준

당사는 [반반택시]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광고 및 판촉 활동 필요 시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비고
광고	브랜드+상품	100%	없음	분담없음	전국 및 지역 광고
	상품+가맹점 모집	100%	없음	분담없음	
	가맹점 자체 광고	-	100%	분담없음	
	운수종사자 모집 광고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동의절차 시 행사별로 분담비율 안내		<광고> 광고 실시 전 계획안 공지→가맹점사업자 50% 이상 동의→ 가맹점의 행사 참여	
판촉	할인/증정행사	100%	없음	분담없음	전국 및 지역 판촉
	리플렛 등 각종 인쇄·제작비	100%	없음	분담없음	
	개별판촉	-	100%	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제휴	외부 제휴통한 할인 및 적립 등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동의절차 시 행사별로 분담비율 안내		판촉행사 실시 전 계획안 공지 (1)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시→ 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 (2) 가맹점사업자 70% 미만 동의 시→ 동의한 가맹점만 행사 참여	

*다만,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동의비율이 충족되더라도 당사의 사정상 시행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본인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개별적으로 광고(매스미디어 및 SNS 포함)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사전에 광고 및 판촉에 관한 사항(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사용 이미지 등)을 당사에게 통지 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사는 10 일 이내에 귀하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하기로 합니다.

10.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내용

귀하는 가맹사업계약 기간 중 습득하게 되는 당사의 영업비밀을 가맹계약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당사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제 3 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는 당사의 영업비밀을 복제할 수 없고, 복제가 불가결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 당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만 복제할 수 있으며, 복제물에 관하여도 원본과 동등한 보관 및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가맹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당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고, 귀하의 조직 내에서 가맹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담당 직원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직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하며,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당사의 요청이 있으면 가맹계약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당사의 영업비밀이 기재된 자료를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가맹계약이 종료(계약기간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종료를 포함함)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 기재된 원본 자료와 그 복제물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영업비밀의 범위	기간
당사의 기술정보, 고객정보, 시장정보, 매뉴얼, 사업계획, 영업정보, 거래처 정보 등 그 성격상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가맹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① 가맹계약 당사자의 계약내용 위반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이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영업개시 후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상대방에게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 손해금을 지급하고 실제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예치 가맹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위약별로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귀하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하는 해당 손해를 당사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귀하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할 경우, 귀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⑤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당사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⑥ 당사 또는 귀하의 지급요청일에 각 상대방이 지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1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개점절차 및 비용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및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14일 이상	IV.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참고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체결	
정보공개서 제공	- 정보공개서 요약사항 검토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체결	D-14일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D-14일	
장비장착	- 내/외부 설비 장착	1 일	
교육실시	- 운영 및 서비스 교육	1일	
오픈	- 영업시작 - 예치가맹금 수령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 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귀하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으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반반택시] 가맹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는 가맹점에게 별도의 점포환경개선에 대한 비용지원은 없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필요 시 진행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경영지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에 방문 → 경영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개선사항 파악 → 개선사항 발생 시 가맹점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 안내 → 개선사항 시정	가맹본부 부담 (단,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방문 일시, 소요비용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안내 → 가맹점 방문 →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해당내용 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최소시간, 비용

당사는 반반택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및 장소	최소시간	비용 (VAT 포함)	비고	대상
신규 드라이버 교육	서비스 입문 교육	실습교육 (지정 교육장)	8시간	264,000원 (드라이버 1명 금액)	필수 교육	운송가맹점
	매너/안전 교육		8시간		필수 교육	
	고객 클레임 대응 교육		8시간		필수 교육	운수종사자
정기교육 (반기 1회)	매너/안전 교육	집체교육 or 개별 교육	0.5시간	실비	필요 시	운송가맹점
	고객 클레임 대응 교육		0.5시간			
	앱 업데이트 교육		0.5시간			운수종사자
부정기 교육	평가 기반 케이스 교육	집체교육 or 개별 교육	1시간	실비	필요 시	운송가맹점 (평가 기준 미달시)
			1시간			운수종사자 (부정 평가 10회 적발시)

2.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 및 훈련은 귀하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① 귀하(교육내용에 따라 귀하의 관리자, 종업원이 포함될 수 있음)는 당사가 제공하는 개점 전 신규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습득 정도가 낮거나, 교육 참여도가 저조할 경우 재교육과 함께 가맹택시의 운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당사에 재교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은 당사가 교육을 실시할 경우 신규 서비스 교육 외 정기 교육 및 부정기 교육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교육 시 발생하는 실비용은 귀하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재무제표(2021~2022)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
랍니다. -경기도-**

재무제표(2022~2023)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
랍니다. -경기도-**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5 제 1 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의 7 제 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 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